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불 방지 안전공간 마련 및 긴급 조치 후 보고
의무화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14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산불 방지 안전공간 마련 및 긴급 조치 후 보고 의무화 (안 제14조의3)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 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6. 11.

다. 회 부 일 : 2025.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등 지정문화유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화재 등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사찰 등 목조 건축물인 지정문화유산은 산속에 있거나 산과 인접한 곳에 있으므로, 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미비하므로 산불로부터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하여 산불을 방지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Ⅲ. 검토의견

1. 산불 방지 안전공간 마련 및 긴급 조치 후 보고 의무화 (안 제14조의3)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난 위기경보 시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생략) <u><신설></u>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및 공간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u>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을 산불 등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유산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띄워진 산불방지 안전공간(나무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이 제거된 공간을 말한다)을 두어야 한다.</u>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략)

<신 설>

2. (생략)

<신 설>

③ -----시설 및 제2항에 따른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

④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거나 화재발생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우선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시설이나 공간을-----

-----.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에 따른 산불방지 안전공간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산불방지 안전공간 마련에 필요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화재 예방 및 진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도 노력해야 함. 이와 더불어 해당 시설들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 그러나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한 목조 문화유산의 경우 대형 산불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최근 2025년 3월 경북 의성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이러한 목조 문화유산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음. 당시 산불로 인해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데루를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유산 12건과 시도지정유산 23건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 이러한 상황에서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산불 발생 시 문화유산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지정문화유산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산불에 취약한 나무 등을 제거한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제2항).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이나 화재 발생 등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제4항).
- 아울러, 이러한 산불방지 안전공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4조의3제3항제2호 신설), 산불방지 안전공간 마련에 필요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4조의3 제6항).
- 개정안과 같이 지정문화유산 주변에 일정 거리의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화재에 취약한 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산불 확산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음. 이는 단순히 소방시설 확충을

넘어선 적극적인 재난 예방 조치로서 문화유산 보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보고 절차 때문에 초기 대응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즉각적인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산불방지 안전공간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14조의3제2항의 '지정문화유산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띄워진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자연림과의 경계, 인공 조림 지역, 경작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공간의 조성 방식 및 제거 대상 물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14조의3제6항은 산불방지 안전공간 마련에 필요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상은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의미하고, 산불방지 안전공간 설치에 따른 나무 등의 제거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 부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
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국가유산청은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안 제14조의3제2항·제3항·제5항·제6항) 국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이라는
확일적인 거리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화재 발생 등 위급 시 우선조치 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것
에 대해서는(안 제14조의3제4항) 적용대상을 지정문화유산뿐
만 아니라 등록문화유산으로 확대하는 한편 화재 발생 등으
로 위급한 경우에서 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로 우선조치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선조치 전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단체의 장과 협
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재해·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의 피해 예
방 및 최소화를 위해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
며, 산불방지 안전공간 확보 등을 위한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고,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이나 보존에 관한 영향을 고려하여 수목 제거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벌채 등 산림사업 전반을 규율하면서 벌채를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특히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임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의무 규정은 해당 규정과 모순·저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불 및 화재 방지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 혼란과 타 법령 충돌, 자연환경 훼손 및 재산권 갈등 우려로 산불방지 안전공간 규정 신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거리와 대상은 현장 여건과 문화유산 특성에 맞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